

# 2025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승인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 안 번 호 : 제3696호 및 제3698호

다. 제 출 일 자 : 2026. 5. 26.

라. 회 부 일 자 : 2026. 5. 27.

### 2. 제안내용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3. 세입·세출결산 개요

가. 세입결산 총괄

- 예 산 현 액 : 11억 3백만원

- 징수결정액 : 14억 53백만원
- 실제수납액 : 10억 56백만원
- 정리보류액 : 2억 45백만원
- 미 수 납 액 : 1억 52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72.6%(전년도 53.8%)임
- 2025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1억 3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53백만 원이며 이 중 10억 56백만 원을 수납하고(징수율 72.6%), 1억 52백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2억 45백만 원임

**< 2025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 원)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1,103	1,453	1,056	72.6	245	152
일 반 회 계	1,103	1,453	1,056	72.6	245	152

**나. 세출결산 총괄**

- 예 산 액 : 467억 84백만 원
- 예산성립후 증감 : 55억 93백만 원
- 예산현액 : 523억 77백만 원
- 지 출 액 : 403억 40백만 원
- 이 월 액 : 97억 35백만 원
- 집행잔액 : 23억 2백만 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4.4%(전년도 8.1%)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2백만 원
- 지출잔액(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17억 원

-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23억 77백만 원으로 이 중 403억 40백만 원을 집행하고 97억 35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2백만 원(불용률 4.4%)이 발생하였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이월액은 일반회계 61억 98백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 52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1억 86백만 원 이고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3억 37백만 원(불용률 3.7%), 주택사업특별회계 57백만 원(불용률 0.8%), 도시개발특별회계 9억 8백만 원(불용률 9.8%)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 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b>합 계</b>	<b>52,377</b>	<b>40,340</b>	<b>9,735</b>	-	<b>2,302</b>	<b>4.4</b>
일 반 회 계	35,755	28,221	6,198	-	1,337	3.7
특 별 회 계	16,622	12,119	3,538	-	966	5.8
주택사업특별회계	7,397	6,988	352	-	57	0.8
도시개발특별회계	9,226	5,132	3,186	-	908	9.8

## 4.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 가.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14억 53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56백만 원을 수납(징수율 72.6%)하였고 정리보류액은 2억 45백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2백만 원임

####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b>일반회계</b>	<b>1,103</b>	<b>1,453</b>	<b>1,056</b>	<b>72.6</b>	<b>245</b>	<b>152</b>
세외수입	96	446	48	10.8	245	152
경상적세외수입	2	7	7	100	-	-
임시적세외수입	22	403	6	1.4	245	15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	36	36	100	-	-
보조금	1,007	1,007	1,007	100	-	-
국고보조금등	1,007	1,007	1,007	100	-	-

- 세입은 주로 그외수입, 기타과태료 등으로 구성됨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b>일반회계</b>	<b>1,103</b>	<b>1,453</b>	<b>1,056</b>	<b>72.6</b>	<b>245</b>	<b>152</b>
세외수입	96	446	48	10.8	245	152
경상적세외수입	2	7	7	100	-	-
기타이자수입	2	7	7	100	-	-
임시적세외수입	22	403	6	1.4	245	152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지난연도 수입	14	399	1	0.3	245	152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7	2	2	100	-	-
그외수입	-	3	3	10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	36	36	100	-	-
기타과태료	72	36	36	100	-	-
보조금	1,007	1,007	1,007	100	-	-
국고보조금등	1,007	1,007	1,007	100	-	-
국고보조금	1,007	1,007	1,007	100	-	-

##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57억 55백만 원으로 이 중 282억 21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61억 98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7백만 원(불용률 3.7%)이 발생하였음

### < 일반회계 세출결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b>일반회계</b>	<b>32,152</b>	<b>35,755</b>	<b>33,879</b>	<b>28,221</b>	<b>6,198</b>	<b>1,337</b>
사업비	31,387	31,387	33,204	27,546	6,198	1,245
재무활동비	3	3	3	3	-	0.001
행정운영경비	763	763	671	671	-	91

## 3) 세출예산 집행관련

- (1) 예산 이용·이체·전용·예비비지출 해당 없음

## (2) 예산변경

○ 일반회계 변경은 총 2건, 50백만 원임

-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운영 활성화(공공운영비) 1.5백만 원
- 미래서울도시관 조성(감리비) 49백만 원

## (3)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총 1건, 4억 원임

-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4억 원

○ 사고이월은 총 19건, 57억 98백만 원임

- 도시공간 정책 현안검토 운영(시설비) 4억 2백만 원
-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시설비) 1억 19백만 원
- 서울시 철도지하화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시설비) 2억 67백만 원
- 탄소중립 도시공간 관리체계 마련(시설비) 2억 61백만 원
- 맑은 공간 서울길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시설비) 1억 38백만 원
- 저층주거지 개선 관리모델 개발(시설비) 1억 44백만 원
-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시설비) 1억 원
- 경관지구 재정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시설비) 1억 75백만 원
- 서울시 미래항공교통(S-UAM) 모빌리티 기체 진출입에 따른 인접지역 도시공간 유형화 연구(연구용역비) 1억 97백만 원
- 미래서울도시관 조성(시설비) 28억 11백만 원
- 미래서울도시관 조성(감리비) 47백만 원
-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안착을 위한 선도모델 사업화 방안 마련(시설비) 1억 97백만 원

- 신속통합기획 수립(시설비) 2억 78백만 원
- 신속통합기획 운영 및 활성화(사무관리비) 30백만 원
- 新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 및 수립기준 재정비(시설비) 1억 91백만 원
- 서울도심 기본계획 부분 재정비(시설비) 1억 43백만 원
- 서울 도시경관 통합 관리방안 마련(시설비) 1억 19백만 원
- 형태 및 필지 단위 도시계획 체계 연구(시설비) 1억 24백만 원
-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전산 개발비) 56백만 원

○ 계속비이월은 해당없음

#### (4) 집행잔액

-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13억 37백만 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2백만 원
  - 지출잔액(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13억 35백만 원

##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해당없음

###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억 97백만 원으로 이 중 69억 88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2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57백만 원임

###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주택사업 특별회계	6,444	7,397	7,340	6,988	352	57
사업비	6,444	7,397	7,340	6,988	352	57

### 3) 세출예산 집행 관련

(1) 예산 이용·이체·전용·변경·예비비지출 해당 없음

(2)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해당없음
- 사고이월은 총 1건, 3억 52백만 원임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시설비)

3억 52백만 원

○ 계속비이월은 해당없음

### (3) 집행잔액

○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57백만 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출잔액(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57백만 원

## 다. 도시개발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해당없음

###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2억 26백만 원으로 이 중 51억 32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86백만 원(이월율 34.5%)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8백만 원(불용률 9.8%)임

####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도시개발특별회계	8,188	9,226	8,351	5,132	3,186	908
사업비	8,188	9,226	8,351	5,132	3,186	908

### 3) 세출예산 집행관련

(1) 예산 이용·전용·변경·예비비지출 해당 없음

(2) 예산 이체

- 예산 이체는 총 1건, 2억 15백만 원으로 업무 이관<sup>1)</sup>에 따른 것임

1)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에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로 이체

### (3)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해당없음

○ 사고이월은 총 6건, 31억 86백만 원임

- |                                      |            |
|--------------------------------------|------------|
|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추진(시설비)                 | 29억 74백만 원 |
| ▪ 문화유산 및 주변부 개선방안 용역(시설비)            | 39백만 원     |
|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시설비) | 43백만 원     |
| ▪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 방안 마련(시설비)       | 50백만 원     |
| ▪ 철도부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비 용역(시설비)         | 56백만 원     |
|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 용역(시설비)           | 24백만 원     |

○ 계속비이월은 해당없음

### (4) 집행잔액

○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8%인 9억 8백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 6억 원     |
| ▪ 지출잔액(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 3억 8백만 원 |

## 5.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

### 가. 기금 총괄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2항<sup>2)</sup>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조성되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6조 및 제7조<sup>3)</sup>에서 정한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무관리비, 그 밖의 부대경비 등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2020년 설치되었음
- 기금의 존속기한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4조<sup>4)</sup>에 따라 2029.12.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음
- 2025회계연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성 결산액은 332억 4백만 원 임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6조(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②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7조(강북등발전계정) ② 강북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로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강북등발전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강북등발전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 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성 총괄 〉

(단위: 백만 원)

년 도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㉒=㉑+㉓)
		계 ㉓=㉔-㉕	수 입 액(㉔)	지 출 액(㉕)	
2025년	-	33,204	33,284	80	33,204

나. 기금 수입 결산

- 2025회계연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현액 330억 60백만 원 대비 100.7%에 해당하는 332억 84백만 원이 실제 수납 되었음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A)	실제 수납액(B)	증감(B-A)
총 계	33,060	-	33,060	33,284	224
이자수입	740	-	740	964	224
기타수입	32,320	-	32,320	32,320	-

다. 기금 지출 결산

- 2025회계연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지출계획현액은 330억 60백만 원이었으나 여유자금 예치를 포함하여 10억 44백만 원을 지출하고 322억 40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이월액	실 지출액 (B)	증감 (B-A)
총 계	33,060	-	33,060	1,044	32,240	1,044	△32,016
예치금	740	-	740	964	-	964	224
장기미집행시설 설치	22,950	-	22,950	80	22,870	80	△22,870
지구단위계획 규정사업	9,370	-	9,370	-	9,370	-	△9,370

## 6. 검토의견

### 가. 세입결산

####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1억 3백만 원으로 14억 53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56백만 원(징수율 72.6%)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2억 45백만 원, 미수납액은 1억 52백만 원임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3억 50백만 원 초과한 주요 원인은 실질적인 세입 증가가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의 당해연도 징수결정에 따른 것임

####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b>일반회계</b>	<b>1,103</b>	<b>1,453</b>	<b>1,056</b>	<b>72.6</b>	<b>245</b>	<b>152</b>	
<b>이자수입</b>	2	7	7	100	-	-	
기타이자수입	2	7	7		-	-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자치구 지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b>보조금반환수입</b>	7	2	2	100	-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7	2	2		-	-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자치구 지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b>기타수입</b>	-	3	3	100	-	-	
그외수입	-	3	3		-	-	- 착오에 의한 수당반납(1,491천원) -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반납(1,279천원)
<b>지난연도수입</b>	14	399	1	0.3	245	152	
<b>지난연도수입</b>	14	399	1		245	152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수납액(1,373천원) - 납세자 납부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152,303천원) - 건축주무재산 정정보류액(131,317천원) - 소멸시효완성 정정보류액(113,856천원)
<b>과태료</b>	72	36	36	100	-	-	
기타과태료	72	36	36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국고보조금등	1,007	1,007	1,007	100	-	-	
국고보조금	1,007	1,007	1,007		-	-	- 지가조사, 지적관리, 연속지적도 정비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비

- 미수납액(1억 52백만 원)은 ‘토지관리과’에서 ‘지난연도수입’으로 1억 50백만 원이 공인중개사법(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의 납부태만으로 인한 장기체납에 따라 징수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징수결정액 2억 66백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도시관리과’의 ‘지난연도수입’ 중 2백만 원은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이 납부태만으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토지관리과의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실제 수납액이 2023년 18백만 원(수납률 5.5%), 2024년 7백만 원(수납률 2.8%), 2025년에는 1백만 원(수납률 0.5%)로 매년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부과만 이루어지고 징수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리보류액(2억 45백만 원)도 전액 지난연도수입에서 발생하였으며 ‘시설계획과’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 1억 31백만 원이 건축주 무재산 사유로, ‘토지관리과’ 1억 13백만 원이 공인중개사업법 위반 과태료의 장기체납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 각각 정리보류 처분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함
- 그러나 시설계획과의 기반시설부담금은 2008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신규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종전 부과분의 잔존 채권으로 1억 31백만 원이 2025년 11월 10일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정리보류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서 상으로는 ‘무재산’ 사유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 작성의 정합성이 미흡하다 하겠음

- 향후 결산자료 제출 시에는 최종 정리보류 처분의 직접적 법적 사유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분류·기재하여 의회 심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2025회계연도 세입금 정리보류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리보류액	사 유 별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국세 정리 보류	평가액 부족	기타
합 계	245			114		131				
일반회계	245			114		131				

-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보류된 채권은 채권 자체가 법적으로 소멸되어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2025 회계연도 정리보류액 2억 45백만 원 전액이 회수 불가능한 세입 손실로 귀결되었다는 점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 집행부서는 부과 초기 단계부터 재산 조회·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무재산 정리보류자에 대한 주기적 재산 조사 및 시효 임박 채권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세외수입 멸실 방지를 위한 실효적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 2025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부서별 세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납액	정 리 보류액	미수납액	세부내역	정리보류· 미수납 사유
도시공간 전략과	그외수입	-	1	1	-	-	착오에 의한 수당 반납	-
도시재 창조과	기타이자수입	-	0	0	-	-	실무수습 보험료 반납 이자(250원)	-
	그외수입	-	06	06	-	-	2024년 12월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반납	-
신속통합 기획과	그외수입	-	06	06	-	-	2024년 연가보상비 및 2025년 가족수당 과오납금	-
도시 관리과	지난연도수입	-	2	-	-	2	소송비용(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회수)	납세자 납세태만으로 미징수
시 설 계획과	그외수입	-	0	0	-	-	연가보상비 과지급분 반납(104,600원)	-
	지난연도수입	-	131	-	131	-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으로, 건축주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로 관리 중 '25.11.10.자로 시효완성정리
토 지 관리과	기타이자수입	2	7	7	-	-	기타이자수입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7	2	2	-	-	시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
	지난연도수입	14	266	1	114	151	공인중개사법(부동 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납부태만으로 인한 장기 체납 과태료 건으로 차액발생
	기타과태료	72	36	36	-	-	공간정보의구축 및관리등에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육성에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
	국고보조금	1,007	1,007	1,007	-	-	지가조사, 지적관리, 연속지적도 정비,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 최근 3년간 도시공간본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

(단위: 백만 원)

예산 과목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일반 회계	2025	1,103	-	1,103	1,453	1,056	-	1,056	245	152
	2024	1,844	-	1,844	2,690	1,447	-	1,447	931	312
	2023	746	-	746	2,017	711	-	711	74	1,232

**나. 세출결산**

**1)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57억 55백만 원에 대하여 282억 21백만 원(집행률 78.9%)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98백만 원(이월률 17.3%), 집행잔액은 13억 36백만 원(불용률 3.7%)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 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일 반 회 계	35,755	33,879	28,221	6,198	-	1,337
행정운영경비	763	671	671	-	-	91
사 업 비	34,989	33,204	27,546	6,198	-	1,245
재 무 활 동	3	3	3	-	-	-

- 다음연도 이월액은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관련 명시이월 1건(4억 원)과 “도시공간 정책 현안검토 운영” 외 18건(57억 98백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발생하였음

- 회계연도별 사업비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3.6%로 전년(10.7%) 대비 감소하였고 이월률은 17.3%로 전년(15.7%) 대비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연도별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비	2025	34,989	27,546	78.7	6,198	-	1,245	3.6
	2024	22,948	16,897	73.6	3,603	-	2,449	10.7
	2023	19,788	16,616	84.0	2,063	-	1,109	5.6

**2)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73억 97백만 원에 대하여 69억 88백만 원(집행률 94.5%)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2백만 원(이월률 4.8%), 집행잔액은 57백만 원(불용률 0.8%)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비 집행률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24년 67.4%→'25년 94.5%)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률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24년 31.6%→'25년 4.8%)하였으며 이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 사업 1건에 대하여 3억 52백만 원을 사고이월한데 따른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연도별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비	2025	7,397	6,988	94.5	352	-	57	0.8
	2024	3,009	2,029	67.4	952	-	28	0.9
	2023	-	-	-	-	-	-	-

### 3)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92억 26백만 원에 대하여 51억 32백만 원(집행률 55.6%)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86백만 원(이월률 34.5%), 집행잔액은 9억 8백만 원(불용률 9.8%)인 것으로 나타남

####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연도별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비	2025	9,226	5,132	55.6	3,186	-	908	9.8
	2024	7,126	6,084	85.4	823	-	219	3.1
	2023	7,389	6,797	92.0	524	-	68	0.9

- 사업비 집행률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24년 85.4%→'25년 55.6%)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률('24년 11.6%→'25년 18.6%) 및 불용률('24년 3.1%→'25년 9.8%)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추진” 사업을 포함한 6건5)에 대하여 31억 86백만 원을 사고이월한데 따른 것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추진 일정과 예산편성 시기의 정합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5) <사고이월 사업 6건>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추진(29억 74백만 원, '26.12.준공기한미도래)
- 문화유산 및 주변부 개선방안 용역(39백만 원, '26.5.준공기한 미도래)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43백만 원, '26.4.준공기한 미도래)
- 택지개발지구 단독 주택지 도시관리 방안 마련(50백만 원, '26.2.준공기한 미도래)
- 철도부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비 용역(56백만 원, '26.4.준공기한 미도래)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 용역(24백만 원, '26.4.준공기한 미도래)

### 〈 2025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불응률 (%) (E/A)
			계(C)	명시이월	사고이월			
<b>총 계</b>	<b>52,377</b>	<b>40,340</b>	<b>9,735</b>	<b>400</b>	<b>9,335</b>	-	<b>2,302</b>	<b>4.4</b>
도시공간전략과	8,489	3,640	4,561	400	4,161	-	288	3.4
도시계획과	3,754	3,073	616	-	616	-	65	1.7
도시계획상임기획과	15,905	12,048	3,056	-	3,056	-	801	5.0
도시재창조과	7,862	7,400	391	-	391	-	71	0.9
신속통합기획과	4,753	4,388	308	-	308	-	56	1.2
도시관리과	5,766	4,820	668	-	668	-	277	4.8
시설계획과	1,611	862	80	-	80	-	669	41.6
토지관리과	4,238	4,109	56	-	56	-	74	1.7

## 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결과

### 1)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변경,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 (1) 예산 이용 및 전용 해당사항 없음

#### (2) 예산 이체<sup>6)</sup>

- 2025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의 이체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재정비’ 사업 소관부서 이관에 따라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에서 도시공간본부(도시관리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건, 2억 15백만 원이 이체되었음

### < 예산 이체 내역 >

(단위 : 백만원)

조 직	예산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승인일자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1건)				215	215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시설비			215	2025.07.24	(사고이월예산) 해당 사업의 소관부서 이관(도시관리과)에 따른 예산이체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215	215			

#### (3) 예산 변경<sup>7)</sup>

- 2025회계연도 예산변경은 일반회계에서 50백만 원으로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소관 총 2건에서 예산이 변경됨
  -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종료(25.9.30.)에 따라 미래서울도시관으로 회의실 이전 전 임시사용 기간 중 관리운영(승강기·소방·가스·전기 등) 비용 확보를 위해

6)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소관부서 이관 등 예산을 관리·집행하는 주체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직무권한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7) 예산의 변경 사용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임

동일 단위사업(도시계획 기획 및 심의지원) 내 세부사업 간 예산 변경으로 2백만 원을 확보한 조치는 열린회의실 운영상 안전 공백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타 부서의 운영종료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발생은 사전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연말 예산변경으로 처리된 점은 부서간 정보 공유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이며 향후 타 부서 소관 시설 활용시에는 운영계획 변동사항을 사전에 파악·공유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예산 변경 내역〉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사유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2건)				50	50		
도시계획 기획 및 심의지원	도시계획정책연구수행	사무관리비	100	2	-	2025.12.03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종료에 따른 임시사용 중 건축물 관리운영 비용 확보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운영 활성화	공공운영비	40	-	2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시설비	13,146	49	-	2025.04.15	감리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의 변경사용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감리비	-	-	49		

-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사업은 130억 원이 넘는 대형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편성 시 전시시설 제작과 설치에 대한 감리비를 미 편성함에 따라 시설비 49백만 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감리비로 신설하는 통계목 간 조정을 실시하였음
- 대형 프로젝트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비 소요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4월에 예산 변경을 통해 처리된 점은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부족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향후에는 시설 운영환경 변화 및 대규모 사업의 품질관리 소요를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확히 반영하여 연도 중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2)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

- 2025회계연도 총 이월액은 예산현액(523억 77백만 원) 대비 18.6%에 해당하는 97억 35백만 원(총 27건) 으로 전년도 이월액(총 25건, 53억 78백만 원) 보다 44.8%(43억 57백만 원)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1건(4억 원)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9건(57억 98백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3억 52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건(31억 86백만 원)을 포함한 총 26건, 93억 35백만 원이 발생하여 직전회계연도보다 이월액이 대폭 증가했음
-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는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는 바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예산 편성하여 이월 발생 규모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회계별 · 연도별 이월 내역 >**

(단위 : 백만 원)

구 분	년 도	예산현액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이월액	이월율(%)	이월액	이월율(%)
일반회계	2025	35,755	400	1.1	5,798	16.2
	2024	23,598	-	-	3,603	15.3
	2023	20,392	-	-	2,063	10.1
주택개발 특별회계	2025	7,397	-	-	352	4.8
	2024	3,009	-	-	952	31.6
	2023	-	-	-	-	-
도시개발 특별회계	2025	9,226	-	-	3,186	34.5
	2024	7,126	-	-	823	11.5
	2023	7,389	-	-	524	7.1

**< 2025회계연도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C/A) (%)
			계(C)	명시이월	사고이월	
<b>총 계</b>	52,377	40,340	9,735	400	9,335	18.6
도시공간 전략과	8,489	3,640	4,561	400	4,161	53.7
도시계획과	3,754	3,073	616	-	616	16.4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15,905	12,048	3,056	-	3,056	19.2
도시 재창조과	7,862	7,400	391	-	391	5.0
신속통합 기획과	4,753	4,388	308	-	308	6.5
도시관리과	5,766	4,820	668	-	668	11.6
시설계획과	1,611	861	80	-	80	5.0
토지관리과	4,238	4,109	56	-	56	1.3

(1) 명시이월<sup>8)</sup>

-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의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서 4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선행 계획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이 미수립됨에 따라 후속 계획인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일정 지연에 따른 것임

< 명시이월 사업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이월률(%)	명시이월 사유
<b>일반회계(1건)</b>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400	400	100	□ 선행계획인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미수립에 따라 용역 발주 지연으로 명시이월

- 해당 사업은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2025.1.30.)으로 국가철도 지하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 국가철도 지상 구간 노선<sup>9)</sup>에 대하여 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추진을 위한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편성된 시설비 4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함
- 2025년 2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선정<sup>10)</sup>에서 제외되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절차<sup>11)</sup>에 따라 국토교통

8)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연도 내 지출 완료 곤란 사유를 의회에 미리 명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계획적·합법적 예산 운용 제도로, 의회의 사전 의결이라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통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재정 관리 수단임

9) 대상 구간 : 경부선 구간 + 경원선 구간(6개 노선, 67.6km)  
 - 경부선 구간(34.7km) :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일부  
 - 경원선 구간(32.9km) :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

10)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선정(국토부) : 부산(데크화 2.8km), 대전(데크화 2.4km), 안산(5.1km)

11)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절차 : 종합계획(국토부) → 노선별 기본계획(지자체)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부의 종합계획 수립 완료시까지 기본계획 착수가 불가한 상황으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2025년도 편성된 시설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됨

-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총 사업비 30억 34백만 원 규모의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6회계연도에도 4억 46백만 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명시이월액과 합산하면 총 8억 46백만 원의 가용예산이 확보된 상태임
-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수립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2) 사고이월<sup>12)</sup>

-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총 26건에 93억 35백만 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대비 73.6%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된 주된 사유는 추진중인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임
-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사업 중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감리비(47백만 원), ▲신속통합기획 수립(2억 78백만 원),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 용역(24백만 원),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56백만 원) 등은 사고이월된 예산이 2026년 상반기에 집행된 것으로 파악됨

※ 우선사업 선정 노선은 종합계획 수립 전 기본계획 착수 가능

※ 관련근거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24.1제정, ‘25.1시행)

12) **사고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천재지변, 소송, 인허가 지연 등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과 달리 결산 시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그 발생 사유의 타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이월은 한정된 재원의 적시 활용을 저해하여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사업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사고이월 사유
<b>일반회계(1건)</b>		<b>32,881</b>	<b>5,798</b>	<b>17.6</b>	
도시공간 정책 현안검토 운영	시설비	716	402	56.2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5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시설비	790	119	15.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서울시 철도지하화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시설비	465	267	57.5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탄소중립 도시공간 관리체계 마련	시설비	590	261	44.2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맑은 공간 서울길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시설비	297	138	46.3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저층주거지 개선 관리모델 개발	시설비	500	144	28.7	저층주거지 등 특성지 규제 완화 기분 및 형태·필지 단위 관리모델 개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6.9)에 따른 사고이월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	시설비	200	100	50.0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6. 6.)
경관지구 재정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설비	200	175	87.6	경관지구 재정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6. 9.)
서울시 미래항공교통(S-UAM) 모빌리티 기체 진출입에 따른 인접지역 도시공간 유형화 연구	연구용역비	200	197	98.5	S-UAM 운항공역과 서울시 개발계획 연계방안 연구 용역의 준공 기한 미도래(26.12)에 따른 사고이월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시설비	14,275	2811	19.7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사고이월 사유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감리비	49	47	97.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서울형 용적이익 제도의 안착을 위한 선도모델 사업화 방안 마련	시설비	400	197	49.3	조례 제정 국토부 등 협의과정 추가 소요기간 필요에 따라 준공기한(26.6.30.) 미도래로 사고이월
신속통합기획 수립	시설비	4,319	278	6.4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 용역(흑석동외 9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신속통합기획 운영 및 활성화	사무관리비	363	30	8.3	신속통합기획 홍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新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 및 수립기준 재정비	시설비	591	191	32.3	新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 및 수립기준 재정비 용역 준공기한(26.6.) 미도래로 사고이월
서울도심 기본계획 부분 재정비	시설비	300	143	47.5	도시경관 통합 관리방안 마련 및 서울도심 기본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준공기한(26.3.) 미도래로 사고이월
서울 도시경관 통합 관리방안 마련	시설비	250	119	47.5	도시경관 통합 관리방안 마련 및 서울도심 기본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준공기한(26.3.) 미도래로 사고이월
형태 및 필지 단위 도시계획 체계 연구	시설비	250	124	49.5	형태 및 필지 단위 도시계획 체계 연구 용역 준공기한(26.9.) 미도래로 사고이월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전산개발비	112	56	50.0	용역준공기한(26.2.) 미도래
<b>주택사업특별회계(1건)</b>		<b>3,361</b>	<b>352</b>	<b>10.5</b>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	시설비	3,361	352	10.5	세운 6-1-1구역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6.9.),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실행기준 수립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6.12.),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6.6.))
<b>도시개발특별회계(6건)</b>		<b>4,655</b>	<b>3,186</b>	<b>68.4</b>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추진	시설비	3,409	2,974	87.2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2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문화유산 및 주변부 개선방안 용역	시설비	400	39	9.7	문화유산 및 주변부 개선방안 용역 발주(26.4.) 준공기한 미도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시설비	397	43	10.8	당현천 수변공간 활성화 및 주변 연계방안 마련 용역 등 준공기한(26.5.) 미도래로 사고이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 방안 마련	시설비	100	50	50.0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 방안 마련 용역 준공기한(26.2.) 미도래로 사고이월
철도부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비 용역	시설비	299	56	18.8	철도부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6.6월 준공 예정)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사고이월 사유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 용역	시설비	50	24	47.5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6.4월 준공 예정)

## □ 일반회계 사고이월

### ①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사업은 도시계획적 검토가 필요한 긴급 현안에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연례 반복 편성되는 포괄비 성격의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7억 16백만 원 (전년도 사고이월액 86백만 원을 포함) 중 56.2%에 해당하는 4억 2백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과도한 이월률을 보이고 있음

#### <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계	816	384	402	-	30
사무관리비	50	49	-	-	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	50	-	-	-
시설비	716	284	402	-	29

- 총 10개 용역이 추진되었으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정비사업 밀집지 도로체계 개선방안 구축용역’, ‘성장 잠재권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구상’ 등 5개 용역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음
- 이들 용역은 과업기간이 12개월에 달하거나 '25.10월 이후에 발주되는 등 계약 체결 시점부터 회계연도 내 완료가 불가능한 구조로 추진되어 ‘긴급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용역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명시이월	사고이월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시설비)	630	199		402	29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조례규정 마련용역	22	22			0.2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용역	22	21			0.7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24			109	15	
정비사업 밀집지 도로체계 개선방안 구축용역	100			92	7	
도시공간변화 분석 및 대규모 유휴부지 전수조사	55	53			2	
성장잠재권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구상	100	49		49	2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마련용역	22	21			0.7	
오피스텔 접도조건 완화 방안 검토용역	22	11		11	0.7	
디자인 CG 제작용역	22	21			0.7	
시장부지 합리적 관리방안 재정비	141			141		

※ 예산 현액 : 2025년 본예산

- 특히 이월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부지 합리적 관리방안 재정비용역(1억 41백만 원)'과 관련하여 연도말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지출원인행위 미필 사유<sup>13)</sup>로 사고이월을 하였고 2026년 3월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관련 법규상 사고이월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

13)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으나 긴급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포괄예산을 연말에 이르러서야 집행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적기 집행과 사업관리가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당초부터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과업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내 완료가 불가능함이 명백함에도 연말에 사고이월 하는 것은 사고이월제도의 취지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sup>14)</sup>, 전년도 이월액(86백만 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예산의 50% 이상을 사고이월 한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음
- 따라서 긴급 현안 발생시에도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과업을 설정하여 정책 방향을 우선 수립하고 12개월에 달하는 중장기 성격의 용역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정식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준수하여 상시적 사고이월 의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연도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B)	이월률(% (B/A)	집행액 (C)	집행률(% (C/A)
2023년	200	200	42	21.0	151	75.5
2024년	500	542	86	15.9	430	79.3
<b>2025년</b>	<b>730</b>	<b>816</b>	<b>402</b>	<b>49.3</b>	<b>284</b>	<b>34.8</b>

14)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24.7) p.390

-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 ②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

-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 사업은 서울 대개조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서울시 도시공간 철학을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도시전시관을 서울시청 지하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11억 78백만 원을 포함한 143억 64백만 원으로 이 중 28억 59백만 원(19.9%)이 사고이월됨

### <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총사업비	기투자	2025년도 예산집행현황					향후 투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b>계</b>	<b>14,786</b>	<b>422</b>	<b>14,364</b>	<b>10,743</b>	<b>2,859</b>	-	<b>762</b>	-
시설비	14,697	422	14,275	10,703	2,811	-	760	-
감리비	49	-	49	-	47	-	2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	-	40	40	-	-	-	-

- 사고이월 된 28억 59백만 원은 미래서울도시관 개관일정이 2026년 1월 29일로 확정됨에 따라 ‘전시시설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sup>15)</sup> 2차수의 준공기한이 2026년 2월 28일로 연장된 것을 비롯하여 병행 추진 중이던 연결통로 전시시설 설계·설치용역, 전기·통신 설비공사 등 부대 용역·공사 5건<sup>16)</sup>의 준공기한도 개관 일정에 연동되어 연기됨에 따라 발생하였음
- 감리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2025회계연도 중

15) 전시시설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24.12~’25.12 / 14,324백만원)

- ▶ 1차 : 2024.12 ~ 2025.05 (1,178백만원 / ‘24년도 예산)  
- 주요내용 : 기본구상안 보완 및 전시설계, 도시모형 등 콘텐츠 제작 착수 등
- ▶ 2차 : 2025.05 ~ 2026.2 (13,146백만원 / ‘25년도 예산)  
- 주요내용 : 전시시설 및 전시 콘텐츠 제작·설치, 개관 후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

16) ▣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사업 용역별 현황

예산 변경을 통해 49백만 원을 확보하고 2025년 4월 감리용역(17)을 계약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이 소액을 이유로 준공 시 일괄 기성신청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당해 연도 지출이 전무하고 47백만 원이 사고이월됨

- 시민 대상 상설 전시시설의 특성상 개관 전 시운전·콘텐츠 점검·홍보 준비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주용역 일정 변경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계된 부대 용역·공사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이번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됨
- 다만, 전년도에 이어 2개 연도 연속으로 상당 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전체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점은 사업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 연도별 이월률 현황 >**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A)	다음연도 이월액(B)	이월률(%) (B/A)	집행액(C)	집행률(%) (C/A)
2024년	1,600	1,600	1,178	73.6	422	26.4
2025년	13,186	14,364	2,589	19.9	10,743	74.8

- 또한 감리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 소액이라도 공정에 따라 기성 청구를 유도하여 기성검사를 통한 감리업무 점검 및 예산

구 분	용역기간	용역금액	다음연도이월액
미래서울도시관 연결통로 전시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25.9~'26.1	480,000천원	480,000천원
서울시청 지하1층 휴게공간 화분구매 및 설치	'25.12~'26.2	19,100천원	19,100천원
서울시청 썬큰 조경공사	'25.11~'26.9	303,966천원	303,966천원
서울시청 조경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5.12~'26.9	2,434천원	2,434천원
미래서울도시관 전기·설비공사	'25.7~'26.1	975,139천원	975,139천원

- 17) ■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감리용역
  - 과업기간 : 25.4 ~26.5
  - 수행기관 : 플랫폼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47,310천원

집행 실적 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은 사업계획 수립 및 공정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임

-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감리비 등 필수 경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개관 준비기간 및 부대공사를 포함한 통합 공정계획을 초기 단계에서 수립하여 연도별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이 현실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③ 탄소중립 도시공간 관리체계 마련

- “탄소중립 도시공간 관리체계 마련”<sup>18)</sup> 사업은 2050년 서울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에 적합한 도시공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춘 탄소중립 도시공간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90백만 원이며 이 중 2억 61백만 원(44.2%)을 사고이월하였음

#### < ‘탄소중립 도시공간 관리체계 마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탄소중립 도시공간 관리체계 마련 (시설비)	590	261	-	261	68	44.2

- 당초 해당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과업기간 9개월로 계획되어 당해연도 내 완료를 전제로 하였고 전년도 10월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완료하여 연초 즉각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한 여건이었음에도 4월에야 용역시행계획 방침 수립, 7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준

18) ■: 탄소중립 도시공간 관리체계 마련 용역  
 - 과업기간 : '25.7.14 ~ '26.7.13  
 - 수행기관 : (주)경간도시디자인건축사사무소 외 1  
 - 사업비 : 526,000천원

공 예정 시점이 2026년 7월경으로 확정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함

-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일정 계획의 구조적 취약성과 더불어 집행 과정에서 사업 일정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향후에는 과업기간이 긴 용역의 경우 사전절차 완료 후 연초 신속한 사업 착수와 함께 현실적인 과업기간 및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 ④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관지구의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 용역과 이에 수반되는 법적 절차<sup>19)</sup>를 이행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025회계연도에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임

#### 〈 ‘경관지구 재정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	200	100	-	100	-	50
경관지구 재정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200	-	-	175	25	87.6

- 2025회계연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예산현액은 2억 원이며 이 중 1억 원(50%)이 사고이월 되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

1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역은 예산현액 2억 원 중 87.6%에 해당하는 1억 75백만 원이 사고이월됨

-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 용역<sup>20)</sup>은 2024년 6월 장기계속 계약으로 체결되어 1차수 사업 완료('24.12) 후 2차수 사업을 ('25.1~'25.12) 진행 중이었으나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준공기한이 2026년 6월로 연장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함
-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sup>21)</sup>은 당초 계약기간('25.3.17~'26.1.16) 상 당해 연도 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여 예산 계획과 실제 공정 간의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재정비 용역의 준공기한이 182일 연장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계약금액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협의는 필수적인 법정 절차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재정비 내용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업 일정 연장의 불가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됨
- 그러나 재정비 용역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본격적인 과업 착수 시기

20) **▣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 용역기간 변경사항**(「용역 준공기한 연장 보고」(도시계획과-13813/2025.11.19.))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계약기간	총차	'24.6.21~'25.12.20	'24.6.21~'26.6.20	+182일
	2차	'25.1.1~'25.12.20	'25.1.1.~'26.6.20	+182일
계약금액	총차	265,000,000원	175,103,900원	변경없음
	2차	200,000,000원	200,000,000원	변경없음

2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계약기간	'25.3.17~'26.1.16	'25.3.17~'26.9.16	+243일
계약금액	175,103,900원	175,103,900원	변경없음

가 결정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일 회계연도에 해당 예산을 전액 편성하고 낙찰차액을 제외한 예산 전액을 사고 이월한 점은 선행 사업과의 연계성 및 실제 자금 소요 시기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사례라 할 것임

- 향후 선행-후행 관계가 명확한 연계 용역 추진 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등 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통합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 시기를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현실적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⑤ 서울시 미래항공교통(S-UAM) 모빌리티 기체 진출입에 따른 인접 지역 도시공간 유형화 연구

- “서울시 미래항공교통 모빌리티 기체 진출입에 따른 인접지역 도시공간 유형화 연구” 사업은 UAM 이용수요 및 인프라 입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 교통수단인 UAM의 상용화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97백만 원(98.5%)을 사고이월함

〈 ‘서울시 미래항공교통(S-UAM) 모빌리티 기체 진출입에 따른 인접지역 도시공간 유형화 연구’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연구용역비	200	-	-	197	3	98.5

- 2025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의 UAM 도심권 시범사업 시기 조정(2025년→2032년)<sup>22)</sup>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과업내용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이후 학술용역심의 및 제안서평가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17일에야 최종 계약<sup>23)</sup>이 체결되면서 계약금액 전액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확인됨

- 국가 차원의 UAM 상용화 일정 연기라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경이 주된 원인인 점에서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국토교통부 지침 변경 이전 예산 편성 후 약 8개월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사업 일정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한편 UAM 도심 도입 시기가 2032년으로 대폭 연기된 상황에서 2026년 도출될 연구 결과의 시의성과 정책적 활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향후에는 상위 정책 변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과업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확보된 시간적 여유를 활용하여 단순 학술연구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도시계획 수립 시 실제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과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 주택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

### 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sup>24)</sup>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 사업은 종묘~퇴계로 일대에 선제적 도심 정비 가이드라인(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하고 높이 규제완화

22) 「K-UAM 운용개념서 개정(K-UAM ConOps 1.5) -운용모델 다각화를 중심으로-」(2025.8.UAM Team Korea)

23) ■ S-UAM 운항공역과 서울시 개발계획 연계방안 연구용역  
- 수행기관: ㈜어반에어엑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기간: 2025.12~2026.12  
- 계약금액: 197,000천원

24)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  
- 사업기간 : '21년 ~ '35년  
- 총사업비 : 506,815백만원  
- 사업위치 : 종묘~퇴계로 일대(종로구 종로3기동, 중구 산림동, 입정동 일대)  
- 사업면적 : 439,356.4㎡  
- 사업내용 : 녹지공간 확보 및 고밀·복합 개발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및 공공기여 방안으로 녹지생태공간 확보 및 세부 녹지계획 지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 74백만 원을 포함한 33억 61백만 원으로 이 중 3억 52백만 원(10.5%)을 사고이월 하였음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A-B-C)	이월률%(C/A)
			명시이월	사고이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 (시설비)	3,361	3,009	-	352	-	10.8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123	2	-	122	-	98.4
세운 6-1-1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	355	178	-	178	-	50.2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실행기준 수립용역	53	-	-	53	-	100
도심공원 조성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48	48	-	-	-	-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24년도 사고이월 예산)	274	274	-	-	-	-
보상업무 관련 수수료 및 지적측량 수수료	2,507	2,507	-	-	-	--

-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sup>25)</sup>의 경우 2021년 12월 장기계속계약('21.12.13.~'25.12.20.)으로 체결되어 1차수는 2022년 12월 준공완료 되었으나 2차수 진행과정에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검토 및 협의 기간 추가로 준공기한이 2025년 12월에서 2026년 6월로 6개월 연장<sup>26)</sup>되어 2차년도 준공 기간 미도래로 1억 22백만 원 사고이월됨

25) □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개요  
 - 용역범위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면적 : 439,356.4㎡)  
 - 용역기간 : '21.12.13. ~ '25.12.20.  
 - 1차수 : '21.12.13. ~ '22.12.31. / 2차수 : '23.1.1. ~ '25.12.20  
 - 용역사 : ㈜미래이엔디 + 디에이그룹  
 - 주요내용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발전방향 정립, 활성화계획 수립 등

26) 「계약기간(2차수) 연장 시행 보고」 (도시재창조과-11121,2025.12.5.)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용역기간	1차 : '21.12.13 ~ '22.12.31 2차 : '23.01.01 ~ '25.12.20	1차 : 좌동 2차 : '23.1.1 ~ '26.6.20	증 6개월

- ‘세운 6-1-1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sup>27)</sup>은 세운지구 내 6-1-1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2025년 4월부터 12개월의 용역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1억 75백만 원이 사고이월됨
- ‘세운지구 녹지축 통합관리 실행기준 수립용역’<sup>28)</sup>은 「세운녹지축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지축 통합관리 실행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2025년 11월에 신규 추진되어 회계연도 말 기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계약금액 전액인 55백만 원이 사고이월됨
- 2025회계연도 집행률은 89.5%로 전년도 76.9%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나 장기계속계약의 추가 과업으로 인한 기간연장과 회계연도를 넘기는 과업기간, 하반기 신규 용역 발주에 따른 구조적 사고이월이 혼재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일정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B)	이월률(% (B/A)	집행액 (C)	집행률(% (C/A)
2023년	616	616	86	14.0	530	86.0
2024년	1,100	1,186	274	23.1	912	76.9
<b>2025년</b>	<b>3,087</b>	<b>3,361</b>	<b>352</b>	<b>10.8</b>	<b>3,009</b>	<b>89.5</b>

27) 「세운 6-1-1구역 정비계획 수립 추진 보고」(도시재창조과-1490,2025.2.18.)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계약기간 : 2025.4.30.~2026.4.29.)

- 주요 과업내용

· 정비계획, 건축계획, 교통성·경관성 검토, 실내형정원 및 개방형녹지 조성계획 등

·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수립, 정비계획 건축기본구상 및 교통, 사업성 등 검토

28)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실행기준 수립용역 추진계획」(도시재창조과-11015,2025.12.2.)

- 용역기간 : '25.12 ~ '26.12(12개월)

- 용역금액 : 55백만원(수의계약)

- 계약대상 : 더랩스 대표 정청희

- 향후 이월된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각 예정된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사업 추진시에는 보다 정교한 일정 관리와 예산 편성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①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추진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추진” 사업은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 문화공원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6억 11백만 원 중 29억 74백만 원(82.3%)을 사고이월하였음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추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3,611	591	-	2,974	46	82.3
사무관리비	202	191	-	-	11	-
시설비	3,409	400	-	2,974	35	87.2

- 해당 사업의 당초 본예산은 사무관리비(2억 2백만 원)만 편성되었으나 2025년 4월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7월에 사업시행계획<sup>29)</sup>을 수립하여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설비(34억 9백만 원)를 편성하였음에도 추경예산의 87.2%인 29억 74백만 원을 사고이월함

29)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시행계획(서울특별시시장 제58호, 2025.7.25.)

- 실제 집행된 시설비 4억 원은 설계공모<sup>30)</sup> 보상금 지급금으로 확인되며 추경 편성 이후 추진된 3건의 용역<sup>31)</sup>은 사업기간이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까지 설정되어 있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사업부서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된 사업으로 「지방계약법」 제24조<sup>32)</sup>에 따라 연차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함에도 1차수 계약기간을 '25.12.16.~'26.3.31.로 설정하여 차수계약 자체가 회계연도를 경과하도록 한 것은 장기계속계약의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사업부서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명시이월이나 차년도 예산 재편성 등의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의 재원확보를 우선시하여 행정적 편의에 따라 사고이월을 선택한 사례로 판단되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됨

30) - 2025.8.5.~10.23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  
 - 2025.11.10. : 설계공모 시상식 개최

31) <2025회계연도 발주 용역>

구 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반조사 용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차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기간	'25.09.12 ~ '26.05.14	('25.12.15~'27.2.14 (총차)) '25.12.15~'26.03.31	'25.11.21~'27.1.14
용역비	3억 11백만원	(총차:222억 44백만원) 16억 69백만원	9억 94백만원
수행기관	(주)이필지오텍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외 4개사	(주)라인엔지니어링
지출원인행위 일자	'25.9.12	'25.12.16	'25.11.21
회계연도 내 잔여일수	약 110일	약 15일	약 40일

32) 「지방계약법」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향후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완료 후 추경을 통해 시설비가 편성되는 대형 건립사업의 경우, 입찰절차 소요기간과 회계연도 잔여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가능 규모와 차년도 소요 규모를 구분하여 편성하고,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명백히 경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 명시이월을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사고이월의 관행적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②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주변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40년 이상 운영된 단독주택지의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억 원 중 50백만 원(50.0%)이 사고이월됨

〈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100	50	-	50	-	50.0

-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 수립된 추진계획<sup>33)</sup>에 따라 “주택정비 기준 마련”이라는 과업의 유사성 및 신속한 용역 추진을 사유로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기준정비<sup>34)</sup>를 과업으로 하는 용

33)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기준정비 및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 추진계획」(도시관리과 -1396, 2025.2.13.)

34) 해당 과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2025회계연도 세부사업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에서 충당하며 동일 단위사업(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관련사업) 내 타 세부사업으로 별도 지출품의 집행함

역과 통합발주<sup>35)</sup> 되었으며 2025년 5월 (주)어반피아 외 1개 업체와 계약체결(용역비 1억 68백만 원) 됨

- 통합발주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의무에 부합하고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통합발주로서 「지방재정법」 제47조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세부사업별로 각각 지출품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합발주 자체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당초 추진계획 수립시점에서는 과업기간을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계약체결 시 과업기간이 14개월로 5개월 연장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 향후 유사 용역사업 추진 시에는 추진계획 수립단계부터 과업범위·소요기간·연도별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회계연도별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3)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

- 2025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23억 77백만 원의 4.4%에 해당하는 23억 2백만 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357억 55백만 원)의 3.7%인 13억 37백만 원,

35) ■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기준정비 및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  
- 계약기간 : 2025.5.23. ~ 2026.7.31.  
- 수행기관 : (주)어반피아 외 1개소  
- 용역비 : 167,600,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73억 97백만 원)의 0.8%인 57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92억 26백만 원)의 9.8%인 9억 8백만  
 원이 불용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불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회계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E/A)
총 계	52,377	40,340	9,735	-	2,302	4.4
일 반 회 계	35,755	28,221	6,198	-	1,337	3.7
특 별 회 계	16,622	12,119	3,538	-	966	5.8
주 택 사 업	7,397	6,988	352	-	57	0.8
도 시 개 발	9,226	5,132	3,186	-	908	9.8

〈 2025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불용률 10% 이상 사업 〉

(단위: 백만 원)

회계명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사유
일반회계	도시공간전략과	탄소중립 도시공간 관리체계 마련	600	265	261	74 (12.4%)	낙찰차액
일반회계	도시공간전략과	기본경비	330	246	-	85 (25.6%)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 잔액 발생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경관지구 재정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200	-	175	25 (12.4%)	낙찰차액
일반회계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14,364	10,743	2,859	762 (5.3%)	낙찰차액
일반회계	도시재창조과	공동이용시설 관리	5	3	-	2 (42.0%)	사직구역 이회영 기념관 균형발전본부 분임관리로 시설 유지관리비용 미사용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창조과	충신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200	166	-	34 (17.2%)	낙찰차액
일반회계	신속통합기획과	신속통합기획 운영 및 활성화	393	309	30	54 (13.6%)	자문 회의 수당 등 지출 집행 잔액
일반회계	도시관리과	형태 및 필지 단위 도시계획 체계 연구	250	89	124	37 (14.9%)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자치구 예산지원)	2,096	1,870	43	183 (8.8%)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용역 축소 및 자체 수행
도시개발 특별회계	시설계획과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51	5	-	46 (90.0%)	행정착오로 사고이월 용역예산 오기
도시개발 특별회계	시설계획과	(구)공항고 부지 회계간재산이관 추진	600	-	-	600 (100%)	회계간 재산이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등 교육청 측 사유로 지연,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 협약 미체결

## □ 일반회계 집행잔액

### ① 기본경비

- 도시공간전략과에서 편성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는 예산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억 30백만 원 중 25.6%에 해당하는 85백만 원을 불용하였음
-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 100%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억 38백만 원 중 81백만 원(59.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본경비 전체 불용액의 95.3%를 차지하여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
- ‘국내여비’의 불용 발생사유는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2024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34.9%의 불용률을 나타낸 바 있으며 불용률이 전년 대비 약 24.1% 상승하여 기본경비 통계목 중 가장 높은 집행잔액 비율이 지속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 ‘국내여비(도시공간전략과)’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B)	이월률 (B/A)	집행액	집행잔액 (C)	불용률(% (C/A)
2023년	206	-	-	39	167	81.1
2024년	106	-	-	69	37	34.9
<b>2025년</b>	<b>138</b>	-	-	<b>57</b>	<b>81</b>	<b>59.0</b>

- 따라서 집행부는 3년 연속 동일한 사유로 과도한 불용액이 발

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최근 3개년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출장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반복적인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기준과 집행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 ①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사업은 토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토지적성평가와 도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취약 지역의 식별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51백만 원은 모두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예산이며 46백만 원(불용률 9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도 본예산에 2억 20백만 원이 편성되어 2024년 4월에 1억 72백만 원의 용역 계약<sup>36)</sup>을 체결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시 계약변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51백만 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 그런데 사업부서(시설계획과)는 2024년 12월 24일에 이미 46백만 원을 지출하여 실제 계약 잔액이 5백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액 확정 시<sup>37)</sup>(’25.1.10.이

36) <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기간 변경 현황 >

구분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비 고
계약기간	'24.04.04. ~ '24.12.31.	'24.04.04. ~ '25.03.31.	'24.04.04. ~ '25.08.31.	기간연장
계약금액	171,600천 원	171,600천 원	171,600천 원	변경없음

※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 의뢰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기간 필요 등 내실있는 과업추진을 위해 준공기한 변경

37)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산정한 51백만 원을 그대로 사고 이월액으로 확정하였음

〈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예산 집행·결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불용률(%)
				명시이월	사고이월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2024(실제)	220	166	-	5	48	22.0
	<b>2024(결산)</b>	<b>220</b>	<b>166</b>	-	<b>51</b>	<b>2</b>	<b>0.9</b>
	2025(실제)	5	5	-	-	0	0
	<b>2025(결산)</b>	<b>51</b>	<b>5</b>	-	-	<b>46</b>	<b>90.0</b>

- 그 결과 2025회계연도에는 실제 필요한 이월예산 5백만 원을 초과하는 51백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과다 계상되었으며, 2025년 9월 10일 실제 잔여 대금 5백만 원을 지출한 후 나머지 46백만 원을 집행잔액(불용)으로 처리하면서 불용사유를 “행정착오로 사고이월 용역예산 오기”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 기준 및 서울시 규칙에서 사고이월 확정 시점을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로 유예한 것은 지출액과 이월가능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월 규모를 확정하기 위함임에도 확정 이전 이미 집행이 완료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월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이월예산 확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회계 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로 생각됨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 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실제 48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축소되고 2025회계연도 불용률이 실제 0%에서 90%로 과대 계상되는 등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결산 통계가 연쇄적으로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사고이월액 확정 시점에 해당 연도 말 집행·정산 내역을 반드시 재점검하여 이월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월예산 및 불용액 집계 시 전년도 지출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비교·확인하는 내부 점검 절차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②(구)공항공 부지 회계간재산이관 추진

- “(구)공항공 부지 회계간 재산이관 추진”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이적지의 공공적 활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구)공항공 부지(강서구 방화동 539-1, 16,387㎡)를 서울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억 원 전액 불용되었음
- 서울시는 2023년 12월 수립한 추진방침<sup>38)</sup>에 따라 기존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7항<sup>39)</sup>에 근거하여 대장가격(공시지가) 기준으로 총사업비 624억 원을 산정하여 2024년 2월 투자심사(적정)를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2025년 1차년도 계약금 6억 원을 편성하였음

38) 「(구)공항공(학교이적지)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회계간 재산이관 추진계획 수립」(서울특별시시장 제151호, 시설계획과-13501,2023.12.26.)

3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2025.1.7. 삭제)

- 그러나 2025년 1월 7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sup>40)</sup>되어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 유사 이관 시 기존 대장가격 외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대장가격 기준)와 서울시교육청(감정평가액 기준) 간 재산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협약 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됨
- (구)공항고 부지의 입지 여건(김포공항 인접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액이 대장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기존 투자심사 결과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한 재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비록 예산 편성 후 발생한 법령 개정이라는 외부 요인이 불용의 직접적 원인이나 집행부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재산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협의 결과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향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인 만큼 가격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양 기관 간 건설적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4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 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

### 1) 기금 수입 관련

-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sup>41)</sup>에 따라 당초 수입계획액(237억 40백만 원)은 93억 20백만 원 증가한 330억 60백만 원으로 변경되었음

#### < 2025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당초금액 ①	변경금액 ②	증감액 (③=②-①)	비율 (④=③/①)	변경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23,740	33,060	9,320	39.3%	2025.6.27

- 2025회계연도 기금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실제 수납액은 수입계획현액(330억 60백만 원) 대비 2억 24백만 원(0.7%) 증가한 332억 84백만 원임

#### < 2025회계연도 기금 수입결산 >

(단위 : 백만 원)

예산과목	수입계획액		수입계획 현액 (①)	수납액 (②)	증감액 (② - ①)
	당 초	수 정			
수 입 총 계	23,740	33,060	33,060	33,284	224
200 세외수입	23,740	33,060	33,060	33,284	224
216 이자수입	-	740	740	964	224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	740	740	964	224
224 기타수입	23,740	32,320	32,320	32,320	-
224-07 그외수입	23,740	32,320	32,320	32,320	-

4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가결(25.6.27))  
 - 당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은 연 1회씩 5회 균등 분할납부를 가정하여 21억 40백만 원을 그외수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107억 20백만 원을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에 따라 그 차액만큼 증액 변경함

- 수입계획현액과 실제 수납액간의 차이는 그외수입의 사고이월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계획(7억 40백만 원) 대비 2억 24백만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그외수입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영된 수입계획액(323억 20백만 원) 전액이 수납됨

## 2) 기금 지출 관련

-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당초 237억 40백만 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330억 60백만 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바 여유재원 예치를 포함하여 10억 44백만 원을 지출하고 322억 40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 2025회계연도 기금 지출 결산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당 초	수 정			
합 계	23,740	33,060	33,060	1,044	32,240
예치금	23,740	740	740	964	-
장기미집행시설 설치 (암사역사공원 조성)	-	22,950	22,950	80	22,870
지구단위계획 규정 사업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	9,370	9,370	-	9,370

## □ 세부사업별 기금 지출 현황

### ① 암사역사공원 조성

-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42)에 따라 조성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활용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하여 강동구 암사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미보상 토지 보상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한 229억 50백만 원 중 80백만 원(집행률 0.35%)을 집행하고 잔액 228억 70백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음

- 해당 사업은 2025년 하반기 보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열람공고,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sup>43)</sup>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어 보상비의 99.6%에 달하는 금액을 이월처리 한 것으로 확인됨
-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공탁에 이르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소유자와의 협의 단계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내재된 측면이 있는 바, 보상금 지급 일정이 회계연도 말(11월~익년 2월)에 집중되도록 설계된 점이 대규모 이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토지보상 절차의 단계별 소요 기간과 실제 보상금 지급 가능 시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별·단계별 기금 편성을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43)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활용계획」(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1007, 2025.1.24.)

## ②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sup>44)</sup>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기여 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활용하여 노원구 월계동 일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구간의 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93억 70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해 연도 집행액이 전무(집행률 0%)하고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음
-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 보상 절차에는 착수하였으나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의 이견 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기금이 집행되지 못함
- 당초 추진 일정상 손실보상 협의 개시가 하반기(8월)에 시작되고 수용재결 및 공탁 등 후속 절차는 연말과 다음 연도 초로 계획되어<sup>45)</sup> 있어, 보상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견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보상 협의 불성립에 따른 수용재결 및 공탁 등 법정 절차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보상 집행 시점에 맞춘 단계적 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44)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 개요

- 위 치 : 노원구(월계동) 석계로 98-1(광운대역) ~ 월계로(인덕대 교차로)

- 규 모 : 도로 신설 폭 8~13m, 연장 300m

도로 및 보도정비 폭 9~14.5m, 연장 880m

- 사업기간 : 2018~2026.12

- 총사업비 : 42,048백만원(시비 16,339백만원/민간(현대산업개발) 25,709백만원(공공기여 9,370백만원 포함))

45)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활용계획」(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1946, 2025.2.7.)

### 3) 기금 결산 종합의견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2조의2제2항<sup>46)</sup>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조성되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임
- 기금에 대한 결산 결과 332억 84백만 원을 조성하고 80백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332억 4백만 원임

#### < 2025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 백만 원)

전년도말 조성액 ㉔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㉕=㉔+㉖)
	계 ㉕=㉔-㉖	수 입 액㉗	지 출 액㉘	
-	33,204	33,284	80	33,204

- 2025회계연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공공시설등 설치’ 정책 사업비 집행률은 0.2%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암사역사공원 조성)와 지구단위계획 규정 사업(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에 편성된 보상비 예산이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거의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데에 따른 것임
- 기금은 미집행액이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특성상 자칫 예산 집행 관리에 둔감해질 여지가 있는바, 한정된 기금 재원의 효율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적 활용을 위해 사전에 면밀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건 변화 시 신속한 지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없이 기금이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

**<수입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계	23,740	33,060	9,320
이자수입	-	740	740
기타수입	23,740	32,320	8,580

**<지출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계	23,740	33,060	9,320
예치금	23,740	740	△23,000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	-	22,950	22,950
지구단위계획 규정사업	-	9,370	9,370